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364호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 투기 금지) 및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납부의무자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2. 근거법령

가. 과태료 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및 제68조 제3항

나. 공 시 송 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8. 5. 8. ~ 2018. 5. 23.

4. 공고내역

성 명	주 소	위반행위	과태료	반송사유
공**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21길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 복합배출	100,000원	폐문, 부재

5. 내 용

가. 공고기간 내에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동 주민센터(☎02-3396-6746)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 발급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나.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중구청 청소행정과(☎02-3396-5485)로 이의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다. 납부기한(2018.5.24.~2018.6.30.)까지 과태료 미납부 시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기한 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2018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